

## 사망조위금 청구서

※ 앞쪽의 제출서류,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			
소속 기관	기관명	기관번호	
청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-
	집주소	연락처	휴대폰
		사무실	
	금융기관	계좌번호	
혼인신고일	년 월 일	※ '혼인일'은 청구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재	
사망자	성명	사망일	년 월 일
	주민등록번호	청구인과의 관계	청구인의 [부, 모, 배우자 부, 배우자 모, 배우자, 자녀, 기타( )]

■ 본 사망조위금은 **청구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1명에게만 지급하는 급여**입니다. 따라서, 가족 중에 사학연금 법 적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

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」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##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제출서류 (발급 서류는 **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**되어야 함, **유효기간 3개월**)

공통서류	사망자 기준 '기본증명서'(사망신고 및 '사망' 표기 확인 후 발급) ※ 부득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만 그 사유서와 함께 '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' 원본
추가서류	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의 사망 청구인 기준 '가족관계증명서'(사망신고 및 '사망' 표기 확인 후 발급)
	교직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 배우자 기준 '가족관계증명서'(사망신고 후 '사망' 표기 확인 후 발급), '혼인관계증명서' ※ 혼인신고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혼인신고 후 뒤쪽 안내에 따라 서류 3개 이상 제출
※ 청구자 또는 사망자가 외국인 및 국적 상실자	인적 사항, 사망일, 청구인과의 관계 확인 등 위의 서류에 가까운 해당 국가 발행 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(본 서식으로만 청구 가능), 제적등본(2008년 이전 사실관계 확인용)

### 유의 사항

- 1.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본 청구서가 없어도 함께 지급합니다.
- 2. **지급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순위(시행령 제47조의2)**

사망자	수급권자	수급권자 순위
교직원의 - 배우자 -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- 자녀	교직원	1.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.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.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4.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※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던 교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에게 지급 ☞ <b>부양사실 증빙은 '주민등록표 등본' 제출(제401호 서식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도 가능함</b>
교직원 본인	배우자 또는 장제자	1. 교직원 본인의 배우자 2.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 1)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)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)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※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 그 교직원에게 지급

### 3. 혼인신고 이전에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 때 증빙서류

증빙서류(3개 이상)	인정조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청첩장</li> <li>▶ 결혼식 사진(날짜 표기된 것)</li> <li>▶ 결혼식 비용 정산내역서</li> <li>▶ 소속기관 결혼 관련 휴가 등 기안문</li> <li>▶ 소속기관 경조사 게시문</li> <li>▶ 경조금 지급 기안문</li> <li>▶ 그 밖에 결혼 입증 자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증빙서류에는 <b>결혼 일자</b>와 함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</li> <li>☞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<b>'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' 판결문(인용)</b>이 있는 경우 인정</li> </ul>

### 4.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친생부모가 사망한 때 증빙서류

진술서 및 필수 서류	선택서류(3개 이상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</li> <li>▶ 제적등본(망인 및 청구인 기준 각 1부)</li> <li>☞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 <b>'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' 판결문(인용)</b>이 있는 경우 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민등록등(초)본</li> <li>▶ 인사기록카드</li> <li>▶ (초중고) 생활기록부</li> <li>▶ 건강보험증</li> <li>▶ 부고장 등 장례 서류</li> <li>▶ 청첩장</li> <li>▶ 입퇴원확인서</li> <li>▶ 보험료납입확인서</li> <li>▶ 인우보증서(2명 이상)</li> <li>▶ 그 밖에 입증 자료</li> </ul> ※ 부모, 피부양(피보험)자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

※ 인정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[www.tp.or.kr](http://www.tp.or.kr)) 서식자료실에 있는 [친생부모지급기준] 참조

### 5. 청구시효 : 발생일(사망일)로부터 3년

### 6. 청구 안내

- ☞ 서식(제205호) 청구 : 홈페이지([www.tp.or.kr](http://www.tp.or.kr)) / 소식·자료 / 연금자료 / 서식자료실  
 ※ 청구서와 행정기관 등 발급 서류는 반드시 **원본을 우편으로 제출**
- ☞ 인터넷 청구 : 홈페이지([www.tp.or.kr](http://www.tp.or.kr)) / 재직교직원 / 사망조위금 청구(공동인증서 로그인)  
 ※ 행정기관 등 발급 서류는 반드시 **PDF화일(사진 촬영 금지)**로 제출

☎ 문의 : 연금dream 콜센터(전국 단일 전화번호 : 1588-4110)

📍 주소 : (58326)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(빛가람동)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